

의안  
번호

697

【울산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09. 6. 25 ·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9. 7. 2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09. 7. 8

###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조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제명 정비
  -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 나. 상위법의 개정된 조문 반영(법 제23조가 삭제됨)
  - 법 제23조 내지 제29조 →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안 제6조)
- 다. 조문 용어정리(안 제2조, 안 제6조 ~ 안 제10조)
  - 인 → 명, 자 → 사람
  - 규정에 의거 → 규정에 따라
  - 내지 → 까지
  - “관하여”는 삭제

### 4. 근거법규: 공직자윤리법 제24조 ~ 제29조

## 《공직자 윤리법》

제23조 삭제 <2001.7.24>

제24조 (재산등록 거부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2.3]

제25조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서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출석거부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2.3]

제27조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2.3]

제28조 (비밀누설의 죄)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3]

제28조의2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①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영·처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영·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의견없음(2009. 6. 1 ~ 6. 20)

6. 검토의견 : 검토의견 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명: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b> <b>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b></p> <p><b>제2조 (구성)</b>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 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p> <p>2. 2인의 위원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명과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 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p> <p>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b>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b> ①(생략)</p> <p>②(생략)</p> <p>1. ~ 3.(생략)</p> <p>4. <b>법 제23조 내지 제 29조에 해당하는 자</b>에 대한 고발</p> <p>③(생략)</p> <p>1. ~ 3.(생략)</p> <p>④(생략)</p>	<p><b>제명: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b> <b>운영 조례</b></p> <p><b>제2조 (구성)</b> ①----- -----1명-----5명----- ----- ----- -----</p> <p>1. 3명----- ----- ----- -----</p> <p>2. 2명----- ----- -----</p> <p>②----- -----<b>각 호에 따라</b>----- 1. -----3명----- ----- 2. -----2명----- -----</p> <p>③<b>제1항제2호</b>----- -----</p> <p><b>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b> ①(현행과 동일)</p> <p>②(현행과 동일)</p> <p>1. ~ 3.(현행과 동일)</p> <p>4. <b>법 제24조부터 법 제 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b>-----</p> <p>③(현행과 동일)</p> <p>1. ~ 3.(현행과 동일)</p> <p>④(현행과 동일)</p>